

총 무 처

국무총리지시 제 13 호

(720 - 4436)

1985. 9.30.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공무원에 대한 허위진정의 처리지침

공무원에 대한 모함·투서등 허위진정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여 선량한 공무원을 보호하고 수사력등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며, 공직사회에 무사안일풍토가 만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신뢰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허위진정의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각 기관장은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1. 허위진정자에 대한 조치

가. 허위진정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무고처벌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보도를 실시하여 허위진정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것.

나. 각급 민원실에서는 상당한 이유없이 빈번히 민원을 제출하는 자의 명단을 작성 비치하여 통제 관리할 것.

2. 허위진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조치

가. 공무원 관련민원은 제기후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진위를 판단할 것이며, 진위판단 이전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등 불이익한 내부행정조치를 하지 말 것.

나.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였다고 판단되는 자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공무원에 대하여는 기관장이 솔선하여 해당공무원을 적극 보호함으로써 공무원의 진정에 대한 피해의식을 없애도록 할 것.

3. 공무원 관련 민원의 처리절차

가. 각종 민원은 개봉전에 성명·주소를 확인하여 익명, 가명, 허위주소인 경우에는 내용 심사없이 폐기처리 할 것. 개봉후 가명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폐기처리 할 것. (민원사무처리규정 제 2 조제 1 항제 3 호)

나. 실명·실주소 민원인 경우에는 민원인과 먼저 접촉하여 민원인의 진의를 파악하고 사실관계 진위여부를 신중히 파악한 후 조치 할 것.

다. 조사결과 내용이 무고성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민원인을 형사고발조치할 것.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가(05-53, 60-62), 나, 다, 라.